

서울고등법원 2024. 9. 11 선고 2024나2016033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24. 9. 11 선고 2024나2016033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3. 11. 30 선고 2022가단23149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A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서

담당변호사 최정아

피고, 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서평

담당변호사 김나운

변론종결 2024. 7. 17.

판결선고 2024. 9. 11.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3. 11. 30. 선고 2022가단23149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와 소외 C(주민등록번호 1 생략)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7. 13.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에서 피고가 주장하는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 해당 이유 부분을 일부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서 3면 13, 14행의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과 가까운 2023. 7. 17. 기준 5억 6,200만 원으로 평가되었다.” 부분을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2023. 7. 17. 기준 5억 6,200만 원으로 평가되었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역시 5억 6,200만

원이라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서 4면 6행부터 5면 5행까지 부분(“나.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나. 권리보호 이익이 없다는 항변

피고는, C의 채권자인 소외 기술보증기금이 C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 매매에 대하여 사해행위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원상회복청구에 따른 사전구상금 1억 6,000만 원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이에 피고가 2019. 11. 27.경 원물반환에 갈음하여 기술보증기금에 1억 6,000만 원을 지급하고 가압류를 해지하였으므로, 위 1억 6,000만 원은 기술보증기금이 사해행위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청구를 하여 가액반환을 완료한 부분으로서 위 금액 상당의 가액반환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채권자취소권은 민법 제406조에 따라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함으로써 행사할 수 있고 판결의 확정에 따라 비로소 효력이 인정되는 형성권인데, 이 사건의 경우 기술보증기금은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가액배상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이에 피고가 사실상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가액배상의 의미로 기술보증기금에 C의 채무 1억 6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기술보증기금이 피고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없는 이상 기술보증기금이 피고로부터 1억 6,0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기술보증기금이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하여 가액배상을 완료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는 없다[피고가 원용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다51457 판결)의 내용은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의 사해행위에 대하여 채권자가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 및 원상회복 청구를 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 후 그에 기하여 원상회복 또는 가액배상이 완료된 경우에 한하여 원상회복 또는 가액배상이 완료된 부분에 대해 다른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권리보호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이 사건과 구체적 사안을 달리하여 그대로 원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항변도 이유 없다. 】

제1심 판결서 6면 9행의 “이 사건 건”을 “이 사건”으로 고쳐 쓴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준영, 판사 이양희, 판사 이은혜

별지